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세부 시행 사항

-해관총서 공고 제27호('26.3.18) 내용을 중심으로-

2026. 5.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
기획정책본부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우리 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세부 시행 사항을 정리 하여 본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국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중국 해외생산 기업 등록 관련 세부 시행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중국 해관총서,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발표 '25. 10. 14, 시행 '26. 6. 1)」¹⁾(이하 '등록규정') 관련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²⁾ 발표('26. 3. 18.)
- 본 해관총서 공고 제27호에는 '등록규정' 중 제6조·제21조·제30조에 따라 해관총서가 별도로 공포하기로 정한 시행 관련 사항, 등록 관련 수입신고 요구사항 및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에 관한 내용 포함
 - * (제6조)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제21조) 자동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 (제30조)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수입식품 해외 저장기업 범위
- 대중국 K-푸드 수출기업,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대응 필요

□ 주요 내용

-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등
 - 식품의 원료 출처, 생산·가공과정, 식품 안전이력 데이터, 소비그룹, 섭취 방식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국제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 추천을 통해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확정·공개
 - 자동연장 등록 불허 식품으로 육류·육류제품 및 제비집·제비집 제품을 규정하고 수입식품 해외 저장용 냉장·냉동창고 등록 대상으로 육상 동물원성 식품 및 수산물 포함

< 중국 등록대상 수입식품 관련 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

구분	현행 ³⁾ 제248호 시행 '26. 5. 31까지	개정 제280호 발표 '26. 3. 18. 시행 '26. 6. 1부터	공고 제27호 발표 '26. 3. 18.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18개 식품유형	(제6조) '목록제'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고, 해당 식품 목록은 별도 공고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확정 17개* 식품유형
자동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	자동연장 불가	(제21조) 자동연장 가능 · 단 ▲불허 식품 명단 내 포함, ▲등록요건 미충족 (사정기간), ▲해당 국가 식품 수입 중단 경우 자동 연장 제외	▲자동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 규정 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등록관리 실시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	-	(제30조) 해외 저장기업 등록 대상 범위 해관총서 별도 공고	▲수입식품 해외 저장용 냉장·냉동 창고 등록 대상 범위 명확화 육상 동물원성 식품, 수산물 포함

* ①육류 및 육류제품, ②케이싱, ③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④벌꿀 제품, ⑤알 및 알 제품, ⑥식용유지, ⑦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⑧식용곡물, ⑨곡물 제분 및 맥아, ⑩탈수 채소, ⑪조미분말, ⑫견과 및 씨앗류, ⑬건과일, ⑭특수식이식품, ⑮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⑯유제품, ⑰수산물

**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식품유형은 현행 18개에서 17개로 조정('볶지 않은 커피콩·코코아콩' 제외)되었으며, 유지종자, 잡곡, 신선 채소, 건조콩, 조미료 등 일부 식품유형 축소⁴⁾

1)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2)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3/18/article_2026031809353159843.html)

<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개정 전후 비교 >

연번	종전 현행 ⁵⁾ 제248호 (시행 '26. 5. 31까지)	개정 제280호 ⁶⁾ 및 공고 제27호 ⁷⁾ (시행 '26. 6. 1부터)	비고
1	육류 및 육류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
2	케이싱	케이싱	-
3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
4	벌꿀 제품	벌꿀 제품 *벌꿀, 로열젤리, 벌화분, 프로폴리스 등	-
5	알 및 알제품	알 및 알제품	-
6	식용유지 및 유지종자	식용유지	①유지종자는 삭제되었으나, 하위분류에 유지종자(대두분말 1종)은 존치
7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
8	식용곡물	식용곡물 *Rice 종류만 가능	②잡곡 제외
9	곡물 제분 공업제품 및 맥아	곡물 제분 및 맥아	- * 명칭 간소화
10	조미료(调味料)	조미분말(调料粉) *강황가루, 카레가루 등 건조향신료	③조미료 삭제
11	견과 및 씨앗류	견과 및 씨앗류	-
12	건과일	건과일	-
13	특수식이식품	특수식이식품 *콩기반 영유아조제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보조식품, 기타(보조식영양보충품, 운동영양식품 등)	-
14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
15	수산물	수산물	-
16	유제품	유제품	-
17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콩	탈수 채소	④신선채소, ⑤건조콩 삭제
18	볶지 않은 커피콩·코코아콩		⑥삭제

1) ①~⑥ : <수입 농산물 해외기업 신고 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2025년 제219호 공고)⁸⁾의 요구사항 준수⁹⁾

2) 세부유형은 등록시스템(cifer)*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가능 제품 정보> 확인가능(중문·영문 제공)

* 접속 사이트: <https://ciferquery.singlewindow.cn/cfppwebserver/static/pages/cifer/common/html/productSearch.html>

3)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1-04/16/article_2025121221035685383.html)

4)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3/19/article_2026031915262645742.html)

5)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1-04/16/article_2025121221035685383.html)

6)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7)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3/18/article_2026031809353159843.html)

8)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1/12/article_2025122717404012805.html)

9) 해관총서 (http://jckspj.customs.gov.cn/spj/2026-04/08/article_2026040808202462434.html)

○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 중국 수입식품 통관 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 정보 기재 요건과 등록 상태별 수입 가능 기준 및 미준수 시 조치 사항을 명시

구분	세부항목	요구 및 기준
정보 기재 요건	등록번호	· 수입 신고서 '제품 자격' 항목에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중국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신고 접수 불가
	용도	· '상품 기재' 항목의 '용도'란에 "식용" 기재. 미준수 시 신고 접수 불가
	기재 정확성	· 모든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 허위 기재 시 법에 따라 조사·처리
수입식품 신고 기준	공식 추천 대상 기업	· 등록 유효기간 내 생산된 제품은 수입 신고 가능 ·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품질유지기한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가능
	자체 신청 등록기업	· 수입 신고 시점 시 반드시 등록 유효 상태
	등록 정지·취소·말소 기업	· 등록 정지·취소·말소 이전에 선적된 제품은 수입 신고 가능
	특별 요구사항	· 해관총서 별도 요구 시 해당 규정 적용

○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China Import Food Enterprises Registration, CIFER)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신청·변경·연장 등 처리 절차 및 등록정보 조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구분	항목	내용
등록 시스템*	처리 가능 업무	· 등록 신청, 변경, 연장, 중단, 회복(재개), 정보 조회
정보 조회 경로	신청 진행 상황	· 등록 신청 진행 상태, 해관총서 심사 의견 및 피드백 조회 가능
	등록 정보 조회	·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 시스템의 '등록 명단' 메뉴에서 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확인 가능
	등록 안내 자료	· '처리 안내' 메뉴에서 등록 절차, 시스템 매뉴얼, 문의처 등 제공
	제품 정보 조회	· '제품유형 조회' 메뉴에서 제품유형, 해관상품번호(HS코드), 감독관리 식별코드 확인 가능

* CIFER 접속 사이트 <https://cifer.singlewindow.cn>

· 등록 시스템 이용 시 가짜 사이트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당부 명시

※ '등록규정' 관련 현행 및 개정의 원문 및 국문 번역문은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27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 이하 〈등록규정〉)은 2025년 10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관련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등록규정〉 관련 목록 및 명단(list)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출처, 생산·가공 공정, 식품안전 이력 데이터, 소비 집단, 섭취 방식 등의 요소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국제 관행을 결합하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관리 실시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관련 목록, 명단(list), 범위는 동적 관리로 시행된다.

(1)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등록규정〉 제6조에 따라,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에는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알 및 알 제품, 식용유지,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 곡물 제분 및 맥아, 탈수 채소, 조미분말, 견과 및 씨앗류, 견과일, 특수식이식품, 보건식품, 유제품, 수산품이 포함된다.

(2)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

〈등록규정〉 제21조에 따라, 자동 연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식품 명단(list)에는 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이 포함된다.

(3)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관리 실시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
<등록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규정>에 따른 등록 관리 실시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에는 육상 동물원성 식품 및 수산물
저장(보관)에 사용되는 냉장·냉동 창고가 포함된다.

2. 등록과 관련된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1) 정보 기재 요구

화물 방식으로 수입되어 중국 내 시장에 진입하여 인류가 식용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신고서의 “제품 자격”
항목 아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증서란(허가증유형코드 “519”)에
해당 수입식품의 “원산국(지역)”에 대응하는 해외생산기업의 중국 내 등록
번호를 규범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의 “상품 기재” 항목 아래
“용도”란에는 규범적으로 “식용”을 기재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규범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여 해관 서류를 취득한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2) 수입식품 신고 요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의 경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은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되지 않았으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생산되고 품질유지기한 내에 있는
식품 포함);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의
경우, 수입 신고 시 기업 등록이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등록이 정지·말소·취소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의 경우, 정지·말소·취소
이전에 선적된 식품의 수입 신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관총서의 특별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3. 등록 처리 및 정보 조회 경로

(1)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규정> 시행에 협조하고 기업의 등록 신청을 편리하게 하며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이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 변경, 연장, 정지, 회복(재개) 등의 업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등록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cifer.singlewindow.cn> 이다.

해관총서는 관련 기업들에게 식별에 주의하여 허위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것을 당부한다.

(2) 정보 조회 경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등록 신청 과정 중 등록 시스템에서 자사 등록 신청 진행 상황과 해관총서의 심사 의견 및 피드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을 획득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중국 내 등록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 시스템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명단”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업무 안내, 등록 시스템 사용 설명서, 등록 관련 문의 핫라인 등 자료는 등록 시스템의 “업무 안내” 기능을 통해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공표된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과 관련된 제품유형 및 해당 해관상품번호(HS코드), 감독관리 식별코드는 등록 시스템의 “제품유형 조회”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4. 기타 설명

(1) 해외 기업 등록이 필요한 수입 초급 식용농산물 목록, 수입 신고 요구 및 조회 방식 등은 해관총서 2025년 제219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2) 수입식품 및 초급 식용농산물 해외 기업 등록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해관총서는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이에 공고한다.

해관총서
2026년 3월 18일

해관총서는 2026년 3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27호)를 발표하였다. 행정 상대방 및 사회 각계가 이번 공고의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고 배경 및 목적

2025년 10월 14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 이하 〈등록규정〉)을 개정·발표하였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규정〉 시행에 맞추어 수입식품 안전 등록관리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본 공고를 통해 관련 목록 및 명단(list)을 명확히 하고, 등록과 관련된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등록 처리 및 주요 등록정보 조회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다.

2. 주요 설명 사항

(1)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확정

〈등록규정〉 제6조를 명확히 하였다.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유형은 기존 18개 대분류에서 17개 대분류로 조정되었으며, “볶지 않은 커피콩·카코아콩” 항목이 제외되었다. 또한 유지종자, 잡곡, 신선 채소, 건조 콩류, 조미료 등 일부 식품유형이 축소되었다.

제외된 식품 유형은 「수입 농산물 해외 기업 신고 관리 관련 요구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2025년 제219호 공고)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 발표

〈등록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등록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이 가능하나,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공고에서는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등 2개 식품 유형을 해당 명단(list)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동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3) 등록 대상 보관(저장) 기업 범위 명확화

〈등록규정〉 제30조를 구체화하였다. 육상 동물원성 식품 및 수산물의 저온 유통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제 관행 및 기존 운영 방식을 반영해 해당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 창고를 등록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구체화

화물 형태로 수입되어 중국 내 시장에 유통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등록정보 기재 요구사항, 위험 수준별 수입 신고 요구사항, 그리고 등록이 정지·취소·말소 등 비정상 상태인 기업의 식품 수입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5) 등록 절차 및 조회 편의성 제고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 (<https://cifer.singlewindow.cn>)은 유일한 등록 처리 플랫폼이며, 등록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변경, 연장, 정지, 회복(재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정책 및 법규, 기업 정보, 업무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Q1: 《등록관리규정》 실시 후 신청 기업이 누리게 될 구체적인 편의는 무엇입니까?

- 답변: 위험 평가에 기반한 기업 분류 관리를 추진하고, 더욱 편리해진 등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로 발표된 《등록관리규정》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선, 신규 규정은 기존 등록제도와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9만 6천 개의 식품 기업은 이번 신규 규정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편리함'입니다.

(1) 95%의 기등록 기업에 대해 등록 자동 연장 실시입니다.

《등록관리규정》 및 실시 공고에 따라 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기타 식품 생산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유효기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었습니다. 자동 연장이 불가능한 앞선 2개 품목 기업의 경우, 《등록관리규정》은 연장 신청 기한을 기존 '만료 전 3~6개월'에서 '만료 전 3~12개월'로 확대하여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간편해진 기업 변경 절차입니다.

기등록 기업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중국 해관은 유연하고 실무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주로 해당 변경 사항이 기업의 식품안전 위생 관리 및 방호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 승인을 결정함으로써 무역의 정상적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 다음, 신규 등록 신청 기업은 다음의 4가지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식의 최적화입니다.

등록 신청 방식이 기존 '공식 추천 등록'과 '기업 자체 신청 등록'에서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도 기업이 주관 당국으로부터 검사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받은 후 직접 중국 측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간소화입니다.

기업의 신분 증명 서류가 영업집조(营业执照/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에 국한되지 않고 공식 발행 증명서로 확대되었으며, '생산 유형, 생산 능력' 등 등록 정보는 필요시에만 제공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신속한 정보 피드백입니다.

등록 신청 진행 상황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직접 통보되며, 해외 주관 당국에도 동시에 통보됩니다.

(4) '명단(list)등록(清单注册)' 신속 통로 신설입니다.

양호한 협력 기반을 갖추고 수입 등록 관련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경우, 기업은 '명단(list)등록(清单注册)'을 통한 신속한 등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규정 실시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수입 등록 처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Q2: 신규 등록 규정 실시 공고에 명시된 각종 목록 및 명단(list)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상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답변: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1) 위험 평가 기반의 《공식 추천 등록 필요 수입식품 목록》 정비했습니다.

목록 제정 시 다음 세 가지 위험 요소를 고려합니다.

- ① 해당 제품의 식품 안전 위험이 높은 경우(예: 중국 해관에서 부적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식품)
- ②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제품
- ③ 국제적 관례 참고(예: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등 고위험 식품에 대해 등록 관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기 「목록」은 이미 등록규정 시행 공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유형에는 육류 및 육류제품, 수산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등록관리규정》과 비교하여, 유지종자, 잡곡, 신선 채소, 건조콩, 조미료, 볶지 않은 커피콩 및 코코아콩 등 6개 초급 식용농산물 유형을 제외했습니다. 제외된 초급 식용농산물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해관이 앞서 이미 “수입 농산물 해외 기업 신고 관리 관련 요구사항 공고” (2025년 제219호)를 발표하여 감독관리의 원활한 연계를 실현했습니다.

(2)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험 평가 결과, 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등 2개 품목군을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list)에 포함했습니다.

중국 해관은 체계평가, 통관검사,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해 원천(출처) 단계부터 국경 반입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 위험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업 등록은 가장 선행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리수단입니다. 공정 기준과 생산능력이 비교적 고정적이고,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식품 유형에 대해서는 무역 원활화를 고려하여 그 기업의 자동 연장을 허용합니다. 반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해관이 기업의 등록 연장 과정에서 수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안전밸브’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제관례를 반영하여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 저장 기업의 범위’ 확정했습니다. 육류, 수산물 등 저온 저장(보관) 및 운송 과정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요 교역국들도 관련 냉장·냉동 창고에 대해 등록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국제 관행과 현행 운영 방식을 종합하여, 공고에서는 육상 동물원성 식품과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 창고를 등록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관리규정》의 시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요약하면, 상기 목록과 명단(list)은 국제 규범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확정된 것이며, 향후 중국 해관도 위험평가에 근거해 이를 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Q3. 《등록관리규정》에 정부 간 우수한 관리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명단(list)등록(清单注册)’ 방식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명단(list)등록(清单注册)’은 어떻게 시행되며 어떤 편의가 있나요?

- 답변: 2025년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등록관리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새로 추가된 ‘명단(list)등록(清单

注册)’ 방식은 중국 해관이 ‘국제 공동관리’ 원칙 아래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 혁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국 측과 식품안전 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이미 양호한 협력 기반을 갖춘 국가(지역)에 적용되며, 글로벌 식품안전 공동관리의 강화를 통해 등록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등록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며, 무역 원활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지역)는 중국 해관총서와 구체적인 ‘명단(list)등록(清单注册)’ 대상 제품 유형, 추천 방식, 사후 관리 요구사항, 문제 소통 메커니즘, 퇴출 메커니즘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맞춤형 등록관리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고 관련 협력 문서를 체결한 후에는, 해당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약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명단(list)’ 등 자료를 중국 해관총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약정에 따라 ‘명단(list)’ 내 기업에 대해 일괄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동시에, ‘명단(list)등록(清单注册)’ 방식은 기존의 정부 추천 또는 기업 자체 신청을 통한 등록 경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명단(list)등록(清单注册)’에 참여하는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약정에 따라 감독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명단(list)’에 포함된 기업이 등록관리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의 샘플검사 및 평가에 협조하여, 기업 등록 관리의 거버넌스 효율성을 함께 제고해야 합니다.

- Q4. 등록을 신청하려는 많은 해외 생산기업과 식품업계는 등록 처리 기간, 등록 신청 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등록 신청 안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새로운 등록 규정이 발표된 이후, 중국 해관총서는 집중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등록관리규정》 해설, 등록 시스템 사용설명서, 등록 업무 안내서를 마련·발표했으며, 중문·영문 등록 시스템 조작 시연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해외 주관 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련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이들이 등록제도 개혁의 혜택을 보다 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홍보 자료는 모두 중국 해관 표준·법규연구센터의 ‘실크로드 식안(丝路食安)’ 웹사이트 또는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의 ‘업무 안내(办事指南)’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cifer.singlewindow.cn>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1) 등록 처리 기간 관련

등록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 자체 상황, 등록 신청 제품의 위험도, 기업의 가공공정에 대한 심사 중점, 신청자료의 적합성 정도, 그리고 현장(영상) 점검 시 발견된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별 등록 신청 처리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처리 기한을 약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등록 업무는 모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 기업의 등록 신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기업이 신청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정상적인 기업의 등록 신청은 일반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매주 최신 승인 등록 기업 정보를 대외 공표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기업은 중국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신청 자료 관련

《등록관리규정》에서는 기업이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등록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시스템에서도 이를 신청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수 입력 항목은 *표로 표시되어 있어, 해외 주관 당국과 기업은 등록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등록 시스템에는 이미 알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기업의 처리 진행 상황 등 중요 정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기업은 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해관은 인공지능 대형모델 등 신기술을 활용해 등록 관련 질의에 대한 지능형 응답, 등록 신청 보조 작성 기능 등을 개발 중이며, 이러한 신기술과 혁신 조치가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에 더 많은 등록상의 편의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 측이 등록 과정에서 여전히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중 대사관 등 기존 채널을 통해 중국 해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중국 해관은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Q5. 등록규정 시행 공고에서는 수입식품의 신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입 통관 신고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 답변: 수입 등록은 전 과정 관리·감독의 중요한 일환으로, 등록 정보는 생산 원천부터 국경 통관까지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수입식품의 전 과정 추적 가능성 및 관리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역 방식과 신유형 거래 형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록규정 시행 공고는 화물 형태로 수입되어 중국 국내 시장에 유입되어 사람이 섭취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식품에 대해 규범적인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고는

등록이 일시 정지·말소·취소 등 비정상 상태에 있는 기업의 식품 수입 요건도 명확히 하여, 관련 기업이 등록 유효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범에 맞는 수입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범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국 해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며, 허위 정보를 기재해 해관 서류를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중국 해관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사·처벌할 것입니다.

○ Q6. 일반 소비자로서 구매한 수입식품이 등록된 기업에서 생산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싶다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은 소비자들이 수입식품 안전의 사회적 공동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규정》에 따르면, 등록을 취득한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식품 포장에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해당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입식품 포장에 표시된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해당 국가(지역)의 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은 제품 유형, 소재 국가(지역) 등록번호, 중국 내 등록번호, 기업명칭 등 다양한 조건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cifer.singlewindow.cn> 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강조할 점은,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의 신청 및

조회를 위한 유일한 공식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등록 신청, 변경, 연장, 정지, 회복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해외 주관 당국이 추천 등록을 진행할 때, 소비자가 이미 등록된 기업 정보를 조회할 때 모두 반드시 이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등록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 043-719-1752)
기획정책본부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 02-744-8017)
